

Issue Report

2016. 11. 30

수도권 맞춤형 해양(해중)레저 관광여건 조성 방안 연구

김경태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kimkt@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해양(해중) 레저 관광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필요요건에 대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요 약

- 해중레저의 개념은 해양레저의 하나로 해중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형태로 대표적인 종류로는 스낵스쿠버, 스쿠버다이빙, 씨워킹, 해중경관관람(관광잠수정, 해중전망대 등) 등이 있음
- 해중레저 현황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활동인 스낵스쿠버 업체는 전국에 약 18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해안의 강원권과 경북권에 밀집되어 있음
- 국내외사례조사의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의 우수한 해양자원지역 또는 인공해중경관 조성을 통해 해중레저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둘째, 해중레저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자격증 발급, 안전교육 등의 기반시설 조성, 셋째,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된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민 참여 등이 있음
- 이에 따른 해중레저 관광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해중경관지구의 지정을 위한 8가지 기준에 따른 지구 조성, 둘째, 해중레저 기초환경의 개선, 셋째, 해중레저를 통한 지역 수익모델 발굴 필요 함
- 이를 위한 충남의 과제는 첫째, 해중레저경관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특히 특색있는 인공해중경관 조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해중레저 배후 여건 조성으로 해중레저 체험/교육 시설과 해중레저 편의시설 지구 육성이 필요하며, 셋째, 지역주민 연계 방안 마련으로 충남 해중레저 거점마을 지정과 지역 어업인 시설 활용 수 입사업 진행을 제시하였음

CONTENTS

(요 약)

1. 연구의 개요
2. 해양(수중)레저 개념
3. 해양(수중)레저 사례조사
4. 해양(수중)레저 관광여건 마련을 위한 검토
5. 충남 여건 조성 방안

- 목 차 -

1.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해양(해중) 레저산업의 개념.....	3
1)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념 및 범주.....	3
2) 해중레저활동 여건.....	7
3) 해양레저 활동 제도적 여건분석.....	22
3. 해중레저 국내의 사례.....	35
1) 국내 해중레저 사례.....	35
2) 일본 사례.....	42
3) 시사점.....	51
4. 해중레저 관광여건 마련을 위한 검토.....	52
1)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53
2) 해중레저 기초 환경의 개선.....	57
3) 해중레저를 통한 지역 수익모델의 발굴.....	61
5. 충남 관광레저 대상지 선정 고려 사항.....	64
1) 해중레저 경관 조성.....	64
2) 해중레저 배후 여건 조성.....	65
3) 지역주민 연계 방안 마련.....	66
■ 참고자료.....	68

연구의 개요 ◀

0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증대로 다양한 해양을 활용한 레저 활동 인구 증가
- 특히 해중레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중레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충남의 경우 해중레저와 관련된 시설이나 현황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해중레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 이를 통해 국제 관광 시장에 지역의 자원을 알리고 사업 추진을 통해 구축된 지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운영이 자체적으로 이뤄질 것임
- 주요 대상지인 태안군 만리포 지역의 경우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해수욕장, 천리포 수목원 등의 자원 등 해양자원 및 환경과 관련된 자원과 국가적 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행사 개최를 통해 해양생태 환경교육과 지역 수산물 산업 관련 홍보 추진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스킨스쿠버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해중레저활동과 관련된 기초 환경 분석 더불어 활동상의 제약요인,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안지역에서의 스킨스쿠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중레저활동과 관련된 국내의 정책과 이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해중레저활동의 제약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해중레저 활동 여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운영업체 현황을 분석하도록 함
- 둘째, 해외 해중레저활동 여건과 관련 제도 등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해중레저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해외 사례분석은 해중레저산업이 활성화된 미국, 호주 등의 사례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해양환경여건 및 수산업 환경이 유사한 일본지역의 스킨스쿠버활동 관련 사례를 함께 분석하도록 함
- 셋째, 해중레저 활성화와 더불어 어촌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발전 모델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내 여건분석과 함께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국내 연안공간에서의 스킨스쿠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다양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함

해양(해중)레저산업의 개념

02

1)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념 및 범주

(1) 개념

-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와 레저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의 사회적 변화로 해양 레저, 해양레저관광, 해양레포츠 등의 신조어에 가까운 용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개념에는 해양레저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2개의 개념이 복합되어있고 선행연구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와 해양관광으로 크게 구분하여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음. 또한 선행 연구자들도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아직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홍장원, 2012)
- 최근 정부에서는 “해양관광”을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제1항),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및 해양레저스포츠를 모두 의미한다(해양수산부, 2001)고 정의하고 있음
- 여기에서 해중레저의 개념은 해양레저의 하나로 해중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형태로 대표적인 종류로는 스킨스쿠버, 스쿠버다이빙, 씨위킹, 해중경관관람(관광잠수정, 해중전망대 등) 등이 있음

【표 II -1】 해양 레저관광에 대한 정의

연구자	내 용
지삼업 (2000)	• 강과 바다에서 동력과 무동력의 각종 장비를 이용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으로써 비경쟁적 취미활동의 성격이 강하고 해양에서 레저스포츠 활동 중 관광활동이 포함된 개념
백 광·남동현 (2001)	• 해양 스포츠를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해양 스포츠의 참가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상생활권을 떠났다가 다시 귀환하기까지 해당 산업 참가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경제적 창출활동을 해양 레저스포츠관광으로 간주
해양수산부 (2001)	•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및 해양 레저스포츠를 모두 의미함
김경호 (2003)	• 바다, 강, 호수 등 수상 및 수변을 포함한 물에서 레저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관광을 즐기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해양 레저스포츠관광 활동
박철수 (2003)	• 친수공간, 연안, 해중 및 해저의 공간에서 정신적, 휴양적, 신체적, 창조적 활동을 위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레저, 여가,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신동주·박진권 (2004)	• 해안 및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관광 활동으로써 해수욕,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다이빙, 바다낚시, 그리고 요트 등의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면서 관광을 동시에 즐기는 활동의 형태
곽한병 (2005)	•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지는 레저활동 중에서 공간적으로 해역과 연안에 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배성완·오중환 (2006)	• 해안 및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활동으로써 해수욕,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다이빙, 바다낚시 그리고 요트 등의 각종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면서 관광을 동시에 즐기는 활동의 형태
전재균·이상호 (2007)	• 내·해수면, 수중, 친수공간, 해안, 해변공원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해양·수상 레저,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관광과 산업 등의 참가활동 및 경제활동을 포함한 유·무형의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것을 총칭
김낙중 (2010)	• 일상생활을 벗어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해상·해중·해안·강·강 등의 수변(水邊)에서 이루어지는 해양레저스포츠의 행태적 관광활동
이종열·김수훈 (2010)	•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지는 레저활동 중에서 공간적으로는 해역과 연안에 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레저활동

자료: 류상하·조수현(2011)을 근거로 연구자 제작성

(2) 유형

- 해양관광의 유형은 경관감상 해변에서의 일광욕 등의 휴식성 해양활동에서부터 서핑 등과 같이 해양레저활동유형에 따라 해양스포츠형, 해양휴식형, 해양관람형 등으로 구분됨(해양수산부, 2006).

【표 II-2】 해양 레저관광에 대한 정의

형태	종류	내용	
스포츠형 해양관광	보딩	서핑	• 길이 2m 전후의 보트를 조절하여 파도의 경사면을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도타기 스포츠
		윈드서핑	• 파도가 없어도 서프보트(Surf Boat)로 즐기려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서핑보트에 돛을 달아서 바람을 따라 나아가는 것
	요트 및 보트	세일링보트	• 선실이 있는 쿨저요트는 외양에서 돛을 올려 항해(대형요트) • 선실이 없는 단기급 요트는 1~2인승 정도로서 선체의 저항력을 전진력으로 바꾸어 주는 원리로 진행하며, 이용자의 체중 이동에 의해 균형을 취함
		동력요트	• 러너보트라는 선실이 없는 개방형과 크루저라고 불리는 선실이 있는 것이 있으며 해상일주, 낚시, 수상스키 등에 이용
		수상스키	• 워터제트 추진을 이용한 오토바이 타입의 소형 모터보트
	휴식형 해양관광	해양다이빙	<스킨다이빙 : 스노클링> • 스노클, 잠안경, 잠수발을 사용한 간단한 잠수기구로 10m 수심 미만의 얇은 지역을 잠수 <스쿠버다이빙> • 압축공기탱크, 호흡기를 착용하고 수심 10~30m에서 수중 활동
해수욕		• 여름철 모래찼질, 해변캠프, 해변학교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식형 해양관광	
조간대 수렵		• 물때에 맞추어 일정구역의 조간대를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바다의 생태계를 접하게 하여 산교육의 기회 제공 - 조개잡이 등 해변 동식물 채취	
바다낚시		• 유어선, 잔교낚시, 암벽낚시 등	
관람형 해양관광	크루즈	• 유람선에 승선하여 해안을 순항하는 탐방형 관광	
	해중관람	• 해중전망탑, 관광잠수정 등	

자료: 김성규(2009), 우리나라 해양관광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를 편집한 부산발전연구원 인용

- 해양레저는 크게 해양의존형 레저와 해양연관형으로 구분됨
 - 해양의존형은 스포츠형, 휴식형, 관광형으로 구분함
 - 해양연관형에는 비치스포츠, 모래놀이, 해변레크리에이션, 해양경관조망, 해양문화 등이 포함됨

【표 II-3】 해양 레저 활동 종류

형태	종류	내용
해양 의존형	스포츠형	• 보딩(서핑, 윈드서핑) • 요트 및 보트(세일링 요트, 카누, 제트스키, 파워보트 등) • 다이빙(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 고무보트, 패러세일링,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
	휴양형	• 해수욕(바다수영, 물놀이, 일광욕, 모래찼질 등) • 조개잡이, 갯벌체험, 해변캠프 등 • 바다낚시(보트낚시, Trolling, 해중 전망대 등)
	유람형	• 해상유람(관광유람선, 여객선 등) • 해중경관관람(관광잠수정, 해중전망대 등)
해양연관형		• 비치스포츠, 모래놀이, 해변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 해양경관조망, 선척, 조깅 등 • 해양문화탐방(해양 생물 관찰, 문화재 답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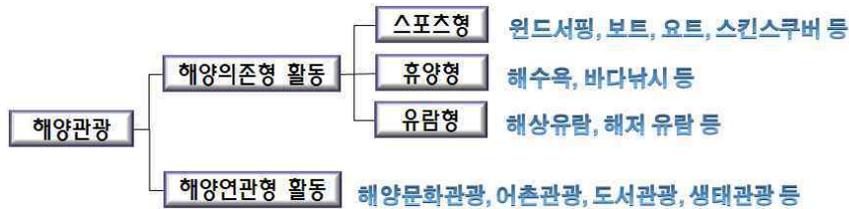
자료: 경기도(2008). 해양레저 유관산업 활성화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 해양레저산업은 해양레저SOC, 장비·보트제조·생산, 해양레저 관광서비스 등으로 구분됨(경기도, 2010.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연구).
 - 해양레저 SOC는 마리나, 방파제, 해양레저 산업단지 조성, 해양레저 콤플렉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장비보트 제조생산은 엔진및추진기, 전자장비, 설계 및 디자인, 생산기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해양레저 관광서비스는 해양관광 및 이벤트, 보트쇼, 레이싱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2) 해중레저활동 여건

(1) 해중레저활동 정의

- 우리나라의 국내 해양관광은 여름철 휴가기간을 중심으로 해수욕과 해안경관감상이 주된 관광활동으로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음
- 한편, 최근 들어 해양관광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마리나, 크루즈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스킨스쿠버 등 해중레저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해야 해양관광의 구성 및 해중레저 활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해양관광은 크게 해양의존형과 해양연관형으로 구분되며 스킨스쿠버를 포함한 해중공간에서의 관광활동은 해양의존형 활동에 포함됨



자료 : 김성귀, 「해양관광론」, 현학사, 2007.

【그림 11-7】 해양관광의 유형

- 해중공간에서의 관광활동은 해중레저 혹은 해중관광은 'Underwater Tourism' 로 분류되고 있으며 해중공간에서의 관광활동을 위한 장비의 사용 여부나 공간의 이용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음
 - 즉 해중관광은 크게 스쿠버다이빙과 수중활동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쿠버다이빙은 스킨다이빙과 스노클링, 비치다이빙 등 수면 활동공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여기서 스쿠버(SCUBA)는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의 머리글자이다.
- 스쿠버다이빙을 정의하면 수중호흡기를 가지고 잠수하는 행위로 1950년에 도입되었으며 레저활동 이전에 어업활동/산업 잠수를 위하여 활용되었음
- 그리고 수중활동영역과 이를 위한 장비의 활용에 따라서 서핑, 언더워터 위킹(씨 워킹), 관광 잠수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한편 해중레저 또는 해중관광은 대부분 스쿠버다이빙활동으로 통용되고 있음

- 해중레저활동에 따른 세부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 해중레저는 스킨스쿠버 이외에도 장비의 사용 여건에 따라 활동유형이 다양하며 동력장비를 이용하는 활동으로는 관광잠수정이나 수중 스쿠터가 있음
 - 한편, 국내에는 스킨스쿠버와 관련된 활동은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관광잠수정은 제주지역이 크게 활성화 되어있음
 - 한편 국내에는 수중전망탑이나 수중스쿠터, 씨워커와 같은 레저활동은 전개되지 못하고 있음

【표 11-4】 해중레저활동의 분류

구분	내용	비고
스노클링 (Snorke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에서 수심 5m 안팎의 수중을 물안경, 오리발, 스노클을 이용하여 레저활동에 참여 • 해수욕장등 연안을 중심으로 활동 	
스킨다이빙 (Skin div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쿠버(SCUBA) 장비가 아닌 마스크, 스노클, 핀 등을 부착하고 물 속에 잠수하는 것으로 수중안경이나 오리발 등 간단한 잠수도 구만을 가지고 레저활동에 참여 	
스쿠버다이빙 (Scuba div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급식 수중호흡기(scuba) 등 도구를 몸에 갖추고 잠수하는하며 한계수심 약 30m의 깊이까지 레저활동이 가능함 	
해중체험 (Underwater walking)		
관광잠수정 (tourism submarines)		

자료: 홍장원(2012).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국내 스킨스쿠버 활동 현황

가. 스킨스쿠버 업체 및 동호회

- 국내에는 해중레저를 포함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전체에 대한 인구나 시장규모, 활동의 제약점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함
- 이에 따라서 스킨스쿠버활동과 관련된 기초적인 현황자료 또한 전무한 실정이며 스킨스쿠버 교육을 위한 주요 교육 기관별로 발급되는 스킨스쿠버 자격증(Diver Certification Card, C-Card) 또한 그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홍장원, 2012)
- 다만 2010년 조직된 한국 잠수교육단체 대표자 협의회(KDEC)에서 세미나 등을 통하여 비주기적으로 관련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또한 각 단체별로 세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연도별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초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음
- 한편, 해양경찰청은 2010년에 연안지역 수상레저사업의 여건분석과 연계하여 각 스킨다이빙샵을 대상으로 업체 현황과 동호회 회원, 이동수단 등을 파악하였음
- 해양경찰청이 조사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스킨스쿠버 활동자에 대한 기초적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국 연안에는 약 189개의 스킨스쿠버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해양경찰청, 2010)
- 스킨스쿠버 업체의 파악은 국세청 사업등록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한편 국내 스킨다이빙샵들은 수중장비판매업, 수중장비대여업, 수중공사업 등으로 등록하고 있어 관련 업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연안지역의 스쿠버 업체들은 동해안의 강원권과 경북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제주지역 또한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음
- 그리고 배후인구가 많은 부산권에도 스쿠버 업체나 동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본 조사는 연안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의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 비중을 확인하는데 통계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II-5】 전국 스킨스쿠버 업체 및 동호회 현황(2012년 기준)

구 분	스쿠버 업체	동호회	회원수(명)
부산서	10	20	2,258
통영서	31	30	654
여수서	3	4	133
제주서	23	14	590
속초서	28	2	800
동해서	20	3	77
포항서	37	9	148
울산서	2	5	240
군산서	13	12	2,089
목포서	9	13	237
태안서	11	6	85
완도서	2	0	0
합 계	189	118	7,311

자료: 홍장원(2012).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재인용

- 각 지역별 해양경찰서에서 조사한 이들 스쿠버 업체를 통하여 해중레저활동에 참여한 인구를 살펴보면 연간 약 12만명 정도가 스쿠버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업체나 동호회의 빈도수가 높은 강원권과 경북권 등 동해안지역의 활동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동해안이 가지는 자연환경적 조건의 우수성과 더불어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배후시장과의 접근성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서 업체당 평균 이용자수에 있어서도, 강원권(동해, 속초)의 활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55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스킨스쿠버 활동은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

【표 II-6】 전국 스킨스쿠버 활동자 현황(2012년 기준)

구 분	스쿠버 업체		연간 이용자수(추정)		업체당 평균 이용자 수
	업체수	구성비	이용자수	구성비	
부산	10	5.3%	3,470	2.8%	347.0
경남(통영)	31	16.4%	17,295	14.1%	557.9
전남(여수, 목포, 완도)	14	7.4%	4,250	3.5%	303.6
전북(군산)	13	6.9%	680	0.6%	52.3
경북(포항)	37	19.6%	20,890	17.1%	564.6
울산	2	1.1%	850	0.7%	425.0
충남(태안)	11	5.8%	6,430	5.2%	584.5
강원(속초, 동해)	48	25.4%	55,880	45.6%	1,164.2
제주	23	12.2%	12,740	10.4%	553.9
합 계	189	100.0%	122,485	100.0%	648.1

자료: 홍장원(2013).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재인용

나. 스쿠버 관련 교육단체

- 2015년 현재 국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스쿠버 관련 교육단체는 약 30여 개로 대부분 국제적인 인증된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잠수관련 인정을 하고 C-card 라고 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 스킨스쿠버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격증 제도도 세분화되어 초급·중급·상급 다이버에게 발급되는 일반자격증 외에 지도자 자격증과 전문 잠수 자격증도 발급하고 있으며 자격증 종류는 잠수형태에 따라 새로운 자격증이 신설되고 있음(국민안전처, 2015)
 - 일반자격증(3종) : 초급 다이버(Openwater Scuba Diver), 중급 다이버(Advanced Scuba Diver), 상급 다이버(Dive Master)
 - 지도자 자격증(4종) : 보조지도자(Assistant Instructor), 지도자(Instructor), 상급지도자(Master Instructor), 지도자교육관(Instructor Trainer)
 - 전문 잠수 자격증(6종) : 전문 잠수 다이버(Specialty Diver), 전문 잠수 지도자(Specialty Instructor), 나이트록스 지도자(Nitrox Instructor), 나이트록스-일반(Nitrox Diver), 레스큐 지도자(Rescue Instructor), 레스큐-일반(Rescue Diver),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First Aid & CPR)
- 테크니컬 잠수라고 하여 잠수 수심이나 수중 체류시간 등이 일반적인 잠수와는 다른 형태의 잠수를 교육하는 단체도 국내에 도입이 되어 교육을 하고 있음

- 테크니컬 잠수는 일반적인 호흡기 등을 다른 형태로 사용하거나 개방형 회로가 아닌 폐쇄형 회로를 사용하여 잠수를 함으로 특수한 형태의 잠수교육으로 활동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표 II-7】 국내 스쿠버 교육단체 현황

단체 형태	단체 명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KUDA),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KCDTA), 한국수중환경협회(GSA),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영리 단체	PADI ASIA PACIFIC, SDD/RAID인터내셔널, SDI/TDI/ERDI KOREA, BSAC KOREA, IANTD KOREA, SSI KOREA, CMAS KOREA, PDIC-SEI ASIAPACIFIC, NASE KOREA, NASDS, ANDI, NDL KOREA, ISEA, IDEA-ASIA, NAPD, IDIC KOREA, ACUC 한국본부, NAUI ASIA PACIFIC, ADS, GUE, SNSI, UTR, PSAI, PSDC, Y-scuba

자료: 국민안전처(2015). 수중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다. 스킨스쿠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 일반인들이 스킨스쿠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이빙센터나 다이빙교육시설(다이빙풀, 다이빙리조트)을 통하여 각 교육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일정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C-Card를 발급받으면 됨
- 다이버 자격증이라고 불리는 C-Card는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공인자격증 아님. C-Card는 스쿠버 다이빙이 도입된 초창기 다이빙활동에 따른 사망사고가 급증하게 되자 다이버들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전문다이버들이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음
- 이러한 스킨스쿠버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단체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스쿠버다이빙은 C-Card를 발급 받게 되면 누구나 다이빙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이빙 참여기간과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상위 단계의 자격증을 발급받게 됨
- 스킨스쿠버 교육단계에 따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으며 모든 교육단체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님
- 또한 C-Card를 A라는 교육단체를 통하여 받았더라도 보다 상위의 자격증은 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크로스오버(Crossover)도 할 수 있음

스쿠바다이빙 교육단계도



자료 : 울진해양레포츠센터 홈페이지(www.uljinleports.co.kr)
【그림 II-13】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단계

- 한편, C-Card 발급 이후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상위의 자격증이나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이수가 요구됨

【표 II-8】 스킨스쿠버 자격증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Open water Scuba Diver (C-C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신청(대한수중협회공인잠수점이용) 이론 교육 10시간, 수영장 교육 20시간 해양 실습 잠수 5회 이상
Advanced Scuba Di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 자격증 취득 잠수 경험 20회 이상 17가지 특수 잠수 자격증 중 4개 이상 획득
Diver Ma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급 자격증 취득 17가지 특수잠수 중 중 8개 이상 획득 조교활동 1회 이상/ 잠수경험 50회 이상 이론 교육 및 시험 10시간, 수영장 실기 훈련 및 평가 20시간

자료: 홍장원(2013).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편, C-Card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론교육과 수영장교육, 바다교육으로 구분되며 바다교육(해상실습)을 완료하면 C-Card를 발급받을 수 있음



【그림 II-14】 C-Card 발급 프로그램



KUDA

교육프로그램

등급	최소 연령	권장 교육 시간	최소 실습훈련잠수	교육지대 교육생 비율	교육가능 등급	교육받기 위한 기본조건
체험다이버 (Scuba Experience)	12		2회	1:4	초급지도자 이상	
스킨다이버 (Skin Diver)	8	8	2회	1:10 1:16	보조지도자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서명 필요
주니어 스쿠버 다이버 (Junior Scuba Diver)	12	30	5회 (스킨 다이빙 2회 포함)	1:2	초급지도자 이상	부모의 동의서명 필요
오픈워터 스쿠버다이버 (초급) (Openwater Scuba Diver)	15	30	5회 (스킨 다이빙 2회 포함)	1:8	초급지도자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서명 필요
어드밴스드 스쿠버 다이버 (중급) (Advanced Scuba Diver)	15	15	4가지 이상 중급잠수	1:10	중급지도자 이상	Openwater Scuba Diver
다이브마스터 (고급) (Dive Master)	18	30	전문잠수 중 3종목 이상 이수	1:10	고급지도자 이상	Advanced Scuba Diver 구조다이버 로그 50회 이상
최상급다이버 Level 1~30 (Veteran Diver)	20		11가지 전문잠수+ 다이빙 경력 인정		초급지도자 이상	Dive Master 로그 100회 이상
보조지도자 (Assistant Instructor)	18	32	5회 (스킨다이빙 2회 포함)	1:5	고급지도자 이상	Advanced Scuba Diver 30회 이상
초급지도자 (Openwater Instructor)	19	40	5회 (스킨다이빙 2회 포함)	1:5	지도자 감독관 및 교육관	Dive Master / Assistant Instructor 3년 경력, 80회 이상
중급지도자 (Advanced Instructor)	19	40	중급다이빙 실습기준	1:5	지도자 감독관 및 교육관	Openwater Instructor
전문잠수지도자 (Specialty Instructor)	20		종목별 명시		전문잠수 종목별 지도자 감독관 및 교육관	초급지도자
고급 지도자 (Master Instructor)	20	40		1:5	지도자 감독관 및 교육관	중급지도자 5회이상 교육실적 (구조잠수 필수)
지도자교육관 (Instructor Trainer)	30				기술·평가 위원회	고급지도자 이상
지도자감독관 (Instructor Trainer Course Director)			지도자 과정보별 초급, 중급, 고급 실시		기술·평가 위원회 추천	협회 승인

【그림 II-15】 사)한국잠수협회 일반교육과정



전문다이버의 종류

종 목	최소 연령	필수 교육 시간	최소 실습 횟수	소련 잠수	지도자대 교육생 비율	지도자 자격	교육받기 위한 기본조건
1. 장비전문가 (Equipment Specialist)	15	16					전 문 잠 수 지 도 자 A D V A N C E D S C U B A D I V E R
2. 수색 및 인양 다이버 (Search & Recovery Diver)	18	16	2 회		1 : 6		
3. 구조 다이버 (Rescue Diver)	18	16	1일 잠수훈련, 1일 해양실습		1 : 10		
4. 얼음 밑 다이버 (Ice Diver)	18	16	2 회		1 : 2		
5. 수중 사진가 (Underwater Photographer)	15	40	2 회				
6. 수중 영상가 (Underwater Videographer)	15	32	2 회				
7. 동굴 다이버 (Cave Diver)	18	16	4 회		1 : 2		
8. 혼합기체 다이버 (Mixed-gas Diver)	15	40	기초 5회, 대심도 5회				
9. 폐쇄회로 다이버 (Closed Circuit Diver)	15		종목별 명시		1 : 4		
10. 특수장비 다이버 (Special Equipment Diver)	15	20	4 회		1 : 4		
11. 수중 추진기 다이버 (Underwater Vehicle Diver)	15	16	2 회		1 : 8		
12. 응급처치 및 구급안전 (FIRST AID & CPR / AED)	18	16	1일 이론 1일 CPR/AED 실습		1 : 10		

【그림 II-16】 사) 한국잠수협회 전문잠수 교육과정

PADI 코스들과 프로그램의 주요 기준 요약

완전한 기준은 강사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프로그램 / 코스	최소 연령	권장 시간	수중 훈련	비율	최저 강사 자격	사전 자격
에머전시 퍼스트 레스폰스 일차처치 (CPR)	—	4 - 8	—	12:1:1	EFR 강사	—
EFR 이차처치 (응급 처치)	—	2 - 4	—	12:1:1	EFR 강사	—
디스커버 스노클링	—	—	가이드하에 하는 스노클링	—	다이브마스터	—
스킨 다이버	8	12	제한 구역 (1 회 스킨 다이빙 권장)	16:1 (10:1)	다이브마스터	—
PADI 씰팅	8	2	수영장 (<2m / 6ft) 수영장 (2 - 4m / 6 - 12ft)	6:1 (4:1) 2:1	강사 보조 강사 강사 or AI	—
바블메이커	8	1	수영장 제한된 개방 구역	6:1 (4:1) 4:1	강사 (보조 강사) 강사 or AI	—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10	1 - 3	수영장 제한된 개방 구역 개방수역 - 하강줄 1 회 개방수역 다이브	8:1 (4:1) 4:1 (2:1) 1:1 4:1	강사 or AI (DSD 리더) 강사 or AI (DSD 리더) 강사	—
리액티베이트	13	—	제한 구역	10:1	다이브마스터	오픈워터 (주니어)다이버
디스커버 로컬 다이빙	10	—	1 회 개방수역 다이브	—	다이브마스터	PADI(주니어)스쿠버 다이버
PADI 스쿠버 다이버 주니어 스쿠버 다이버	15 10	19	제한수역 2 회 개방수역 다이브	10:1 8:1	강사	—
오픈워터 다이버 주니어 오픈워터 다이버	15 10	31	제한수역 4 회 개방수역 다이브 (선택인 스킨 다이빙 권장)	10:1 8:1	강사	—
어드벤처 다이버 주니어 어드벤처 다이버	15 10	9	3 회 개방수역 다이브	8:1	강사	오픈워터 다이버 주니어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주니어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15 12	15	5 회 개방수역 다이브	8:1	강사	오픈워터 다이버 주니어 오픈워터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주니어 레스큐	15 12	25	개방 수역 10 연습 / 2 시나리오	8:1	강사	(주니어) 어드벤처 다이버 수중 항법 다이빙 할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15	—	—	—	강사	(주니어)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주니어) 레스큐 다이버 자격과 5개 PADI 스페셜티들 또는 TecRec 코스들

【그림 II-17】 PADI 교육과정

PADI 스페셜티 дай버 코스들의 주요 기준 요약 완전한 기준은 강사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스페셜티 코스	최소 연령	권장 시간	수중 훈련	비율	최저 강사 자격	사전 자격
고도 дай버	10	12	2 회 개방수역 дай브	8:1†	고도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дай버
어웨어-산호 암초 보존	—	4	—	—	보조 강사	—
어웨어-물고기 식별 дай버	10	12	2 회 개방수역 дай브	8:1†	어웨어-물고기 식별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дай버
AWARE 상어 보존 дай버 (디스팅티브 스페셜티)	12	12	2 개방 수역 дай브	8:1†	AWARE - 상어 보존 디스팅티브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дай버
보트 дай버	10	12	2 회 개방수역 дай브	8:1†	보트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дай버
캐번 (동굴) дай버	18	24	4 회 개방수역 дай브	8:1 2:1**	캐번 스페셜티 강사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дай버
딥 дай버	15	24	4 회 개방수역 дай브	8:1	딥 스페셜티 강사	어드벤처 дай버
디지털 수중 포토그래퍼	—	10	1 또는 2 회 스노클 다이브 1 또는 2 회 개방수역 다이브	— 8:1†	디지털 수중 포토그래퍼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дай버
다이버 프로파일링 비글 (DPV) дай버	12	12	2 회 개방수역 дай브	8:1	DPV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дай버
조류 дай버	12	12	2 회 개방수역 дай브	8:1	조류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дай버
드라이 슈트 дай버	10	12	2 회 개방수역 дай브	8:1†	드라이 슈트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дай버
엔리치드 에어 дай버	12	18	2 회 개방수역 다이브 (선택 사항)	8:1	EANx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дай버
응급 산소 제공자	—	3	—	12:1	응급 산소 제공자 스페셜티 강사	—
잠비 스페셜리스트	10	6	—	—	잠비 스페셜티 강사	PADI 스쿠버 (주니어) дай버
아이스 дай버	18	24	3 회 개방수역 다이브	2:1	아이스 스페셜티 강사	어드밴스드 오픈워터다이버
멀티레벨 дай버	12	12	2 회 개방수역 다이브	8:1	멀티레벨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다이버
야간 дай버	12	12	3 회 개방수역 다이브	8:1	야간스페셜티 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다이버
픽업포먼스 보안서	10	5	2 회 개방수역 다이브	8:1†	보조강사	(주니어) 오픈워터 다이버
프로젝트 어웨어 스페셜리스트	—	4	—	—	보조 강사	—
공공 안전 дай버	18	30	4 회 개방수역 다이브	8:1	공공 안전 дай버 강사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와 공공 안전 дай버 텀 소스
수색과 인양 дай버	12	24	4 회 개방수역 다이브	8:1	수색과 인양 스페셜티 강사	(주니어)어드밴스드 오픈워터다이버+
반폐쇄 리브리더 дай버(폴핀/애들렌티스)	15	24	3 회 개방수역 다이브	6:1	반폐쇄 리브리더 스페셜티 강사	어드밴스드오픈워터다이버 ++,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사이드 마운트 дай버	15	12	3회 개방수역 다이브	8:1	사이드 마운트 스페셜티 강사	오픈워터 дай버

【그림 II-18】 PADI 전문잠수 교육과정

- 다이빙교육을 통하여 PADI, NAUI, CMAS 등의 C-Card를 발급받으면 이후 지역의 다이빙샵으로부터 다이빙장비를 대여, 구매 할 수 있음. 그리고 다이빙동호회 등을 통하여 다이빙활동에 참여하게 됨



【그림 II-19】 C-Card와 지역 다이빙샵

- 최근에는 다이빙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다이빙교육공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초기에는 다이빙전용공간이 극히 부족하여 서울의 경우 잠실 다이빙수영장을 중심으로 다이빙교육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8개소 정도가 분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올진 해양레포츠센터와 같이 다이빙 풀과 숙박시설, 챔버시설까지 갖춘 공간도 조성되고 있음



자료 : 올진해양레포츠센터 홈페이지(www.ujinleports.co.kr)

【그림 II-20】 올진해양레포츠센터 전경

- 2011년 개관한 올진 해양레포츠시설은 해안지역에 입지하여 다이빙을 위한 모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빙사고에 대비한 챔버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다이빙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이빙전용시설과 더불어 다이빙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근에는 수중레저장비 전시회도 개최되고 있음. 매년 2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수중레저장비 전시

회는 다이빙산업의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림 II-21】 스포엑스 2012(잠수장비 전시전)

(3) 국내 해중경관 우수지역

- 국내에서는 강원도 연안 지역 이외에 제주도(문섬, 차귀도, 자귀도, 섯섬, 범섬 등), 여수~거문도(백도, 소산부도 등), 통영(국도, 얼피도, 파사리도 등) 등 물이 맑고 해저 경관이 좋은 지역이 우수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져 있음
- 국내 우수한 자연 해중경관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으며 동해, 서해, 남해의 각 해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음. 한편, 수도권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에 따라 시장여건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표 II-9】 우리나라 해중경관 우수지역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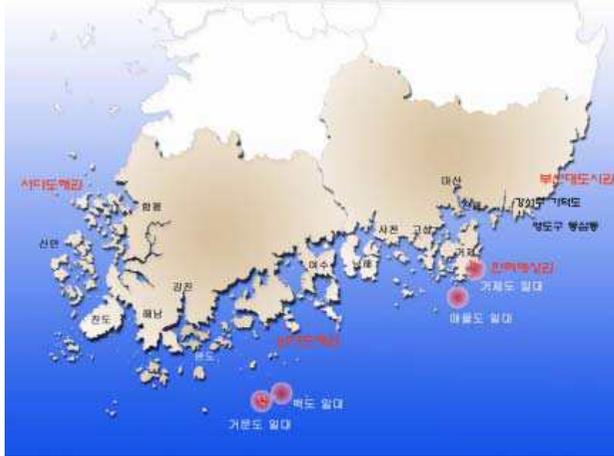
지역	수심(m)	해중시계(m)	특징	주요 경관자원	
제주도	문섬	10~30	10~20	주상절리 조면암 생태계보전지역	파식대, 연산호, 갯돌, 자리돌, 쥐치, 범돔, 줄도화돔, 문어, 해산, 해초류 등
	범섬	10~30	10~20	서귀포항 인접 생태계보전지역	산호군락지, 아치, 다양한 어류, 지형
	섯섬	8~24	10~20	생태계보전지역	물산호 꽃동산, 회귀성 어류, 산호 등
	성산포 자리영	5~27	10~20	해녀 작업장	감태밭, 직벽의 웅장한 모습
	어영	5~30	10~20	복잡한 지형	수중아치, 지형에 따른 경관 수려

자료: 홍장원(2013).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표 II-10】 우리나라 해중경관 우수지역의 개요

지역	수심(m)	해중시계(m)	특징	주요 경관자원	
제주도	형제섬	10~20	10~20	2개 대형아치 3개 소형아치	연산호 군락, 자리돌, 뱀어돔, 다금바리
	송악산	10~15	10~20	수중아치 모래밭	연산호 군락, 라이온 피쉬, 파랑돔, 자리돌 떼, 수중아치
	차귀도	10~30	10~20	해녀 작업장	많은 종류의 산호, 어류
	지귀도	20~30	10~20	유어장(작살피싱)	등굴(아치), 해송, 산호군락, 부채산호
남해	거제도 일원	10~30	10~20	성태(왜구 침입막기 위한 성)크고 작은 섬 겨울철 14℃	열대성 해양생물, 회유성 대형 어류, 수중에 아기자기한 '여' 발달 연산호 군락, 해초, 해송, 어패류 등
	매물도	6~40	평균 20m	'여' 발달, 외도(해양공원) 연계	연산호, 화려한 색상의 수중고착생물, 돌돔, 자리돌, 쥐치, 붕장어, 바닷가재
	백도 일대	5~24	10~20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수직 벽, 수중 고착생물, 부채산호, 연산호 군락, 돌돔, 뱀어돔 등
	거문도	20~30	10~20	해마 보호 켄	등굴(아치), 해송, 산호군락, 부채산호
서해	격렬비열도	10~30	10~20	서해안 특성(갯벌)	줄돔, 우럭, 농어, 방어 떼, 서해안 특유의 무척추 동물(낙지, 문어)
	홍도 일원	15~20	10~20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과 겨울 대조	자리돌, 논쟁이, 나비고기, 능성어, 만타 가오리, 방어와 농어 떼, 독특한 구조로 형성된 바닷과 암초, 작은 등굴, 붉은 산호
	가거도	10~23	10~20	대소의 다양한 섬과 청정해역, 수중 사냥 금지	수중아치, 붉은 부채산호, 등굴, 터널우럭, 돌돔, 농어, 연산호 등
동해	포항 월포 등	20~30	10~20	난파선, 폐선 투하로 인위적 해중경관	난파선에 의한 인위적 해중경관형성, 정착성 어류, 해조류, 불상, 난근석, 사자상, 십자가 등
	고성 봉포	20~30	10~20	해저 골짜기	해저 암반 등

자료: 홍장원(2013).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그림 II -22】 남해안지역 해중경관 우수지역 분포도



【그림 II -23】 동해안·서해안지역 해중경관 우수지역 분포도

3) 해양레저 활동 제도적 여건 분석

(1) 해중레저 활동의 제도적 여건

- 국내 해중레저활동의 분석에서 보듯이 해양관광의 활성화에 따라 해중관련 스쿠버활동 등에 참여하려는 잠재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음(홍장원, 2013)
- 스쿠버 활동과 관련된 기초적 통계자료는 확보되어 있지 못하지만 관련 기반시설이나 동호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중레저활동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해중레저활동 및 그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여부는 차치하고, 활동을 위한 별도의 기본적 정책이나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우리나라는 해중레저 육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이 연계되어 있으나 이를 담당할 주무부처는 부재함
- 또한 현행 법·제도는 해중레저활동 및 관련 행위에 대한 그 어떠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 이를 관리, 규제하기 위한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음
- 스킨스쿠버를 중심으로 하는 해중레저활동과 연계되는 법령 및 제도는 다음의 표와 같음. 우선 해중레저 활동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해중경관지구, 해양경관 보호구역), 농림수산식품부(바다목장사업) 등을 통하여 활동 공간 조성 및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홍장원, 2013)
-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 측면에서는 국토해양부의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잠수센터가 경북 울진에 조성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통하여 일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수준임
- 한편, 해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안전, 환경 교육 등과 관련된 표준화된 모델도 부재하며 다이빙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홍장원, 2013)

【표 II-11】해중레저 관련 법령 및 제도분석

구 분	주요 내용
해중레저 활동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사업장 운영,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안전 이용 수칙 - 어촌어항법 : 어촌관광사업의 추진, 관광기반시설의 정비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수산물 채취,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동
이동수단	- 낚시어선법 : 스킨스쿠버활동자의 낚시어선 승선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유선의 활용 - 해상교통안전법 : 유선 및 기타 선박의 이동
활동공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해양관광의 진흥 및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기타 기반시설 조성	-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 바다목장화 사업

자료: 홍장원(2013).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제약요인 분석

- 스킨스쿠버 활동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제약요인은 크게 이동선박과 기반시설의 문제, 해중레저 활동공간의 부족 및 수산물 절취, 해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교육기반의 미흡이 제약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요인에 대하여 각 법령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해중레저활동을 이등 선박 및 기반시설의 미흡

- 스킨스쿠버 활동과 연계하여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제기되는 것은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낚시어선 승선행위에 대한 위법판결에 따라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위한 이동선박의 제약이 발생한 것임
- 다이빙전용선의 도입을 위해서는 유도선사업법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등록이 필요함. 하지만 다이빙삼의 영세성, 유도선사업법의 선박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 범위의 제약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어선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음
- 한편, 낚시어선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스킨스쿠버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업인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각 법령에 따른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위해 다이빙 포인트에 접근하는 여러 방법론 중 다이빙삼이 이를 주목적으로 하는 다이빙보트를 운영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 범주에 포함됨
- 이용하는 다이빙보트가 총 톤수 5톤 미만·승객정원 13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적용되며, 총 톤수 5톤 미만인 여타 경우 제10조에 의하여 관할구청의 판단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형유·도선으로 분류, 적용됨
- 하지만,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소형선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유·도선 및 그 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쿠버다이빙의 운송을 위주로 하는 소형선박에는 해당 법·규정이 요구하는 시설·장비 및 자격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즉, 대부분 영세한 다이빙 업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¹⁾. 때문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조항과 같이 현실적으로 스쿠버다이빙 활동에 맞지 않는 조항들과 불합리하게 과도한 규정들에 대해서, 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중·소형선박을 위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필요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행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오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동명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1)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요구하는 유·도선장과 매표소의 확보를 포함한 시설·장비·인력, 그리고 영업구역 허가 등의 복잡한 사항들은 적은 인원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즐기는 스쿠버다이빙 활동의 특성상, 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따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신고기준(시행령)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장비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2007.9.28, 2008.12.31, 2011.1.17>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구명동의중 2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유선(5톤이상의 선박으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춘 유선을 제외한다)이 30척이하일 때에는 1척이상, 31척이상 50척이하일 때에는 2척이상, 51척이상일 때에는 50척을 초과하는 때 50척마다 1척씩 가산한 수이상의 비상구조선
3. 승선정원 5인이상 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은 그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만, 승선정원의 50퍼센트이상(영업구역이 하천·호소인 경우에는 25퍼센트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정원의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정원이 13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의 구명줄 1개이상
5. 노도가 있는 유선에 있어서는 그 척수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노도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은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
7. 영업구역이 하천·호소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은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으로서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된다)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
8. 승선정원이 13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 1개이상의 소화기
9.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이 비치된 승강장설비
10.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11.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에는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 해당 유선장에는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과 승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명시설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절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

②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정원 4인이상 시속 20노트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망원경 1개, 자기점화등 1개 이상, 구명동의 4개, 구명부환 2개이상, 구명줄 30미터이상의 인명구조용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9, 2011.1.17>

③유선에 비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용장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의 장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수세 및 운항거리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2008.12.31>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는 승객·선원·인명구조요원 및 기타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법

- 1995년 낚시어선업법이 제정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스킨스쿠버들이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왔으나 현행법에서는 다이버들의 낚시어선 승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낚시어선업법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라 정의하여 낚시인만을 그 승선대상으로 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탑승 및 운송 등의 용도에는 있어서는 그 둘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다이버를 낚시어선의 승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낚시어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낚시어선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스쿠버 관련 단체에서는 낚시어선의 사용을 위하여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은 수산물절취를 우려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다이버들과 어촌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에서 기인하는데, 해중레저활동 나아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레저활동 주체 및 해당 업계와 해당 어촌계 사이에 레저행위의 활성화를 통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및 신뢰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지역 여건을 감안한 법령의 수정도 검토가 필요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대와 낚시줄·낚시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 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안전법은 기본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 즉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제한규정임
- 현행 법규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범주 안에 스쿠버다이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스쿠버다이빙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스쿠버다이빙의 특성상, 바닷가에서 직접 걸어서 들어가며 입수하는 비치다이빙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고무보트, 모터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 다이빙 포인트에 접근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모든 스쿠버다이버들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를 하게 되며, 이에 수상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됨
- 2012년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 여기서 구명조끼란 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말하며, 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라고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2012년 개정 전에는 동 조항에서 호각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그 이상의 구체적 정의가 없었음
-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59조(과태료)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많은 스쿠버다이버들이 같

은 이유로 처벌을 받았음

- 개정된 규정에서 구명슈트를 그 내용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스쿠버다이빙활동을 수상레저활동으로 규정하지 않아 동법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는 이유로 생긴 오류로 볼 수 있음
- 동법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조항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소규모 수상레저기구의 탑승·활동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안전규정이지만, 스쿠버다이버들의 경우 이미 신체 전반에 부력을 제공하여 일반 구명조끼보다 강력한 부력을 제공하는 다이빙슈트 및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구명조끼는 그 효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장기적으로는 동법의 수상레저활동의 범주에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거나 이들 조항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운송·탑승 특별조항으로 두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레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배제)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9〉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4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출항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15〉

-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시행일 2011.12.16>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시행일 2011.12.16>
- [전문개정 2008.3.28]
- 39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이동수단의 문제와 더불어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위한 교육, 접안시설, 치료 시설 등 기반시설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즉 낚시어선을 통한 스쿠버활동 이외에 전용선박의 출입항시설(계류, 승하선 시설) 부족, 해변 비치다이빙을 위한 접안시설의 부족으로 초급 다이버들은 교육을 위하여 도서지역까지 직접 이동해야 함
- 이와 더불어 해중레저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및 치료시설의 부족으로 활성화에 저해가 발생하고 있음

나. 해중레저 활동공간의 부족(어업인과의 마찰)과 수산물 절취

- 해중레저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활동공간의 마찰이 주된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즉, 어업인들은 다이버들의 어장출입에 따른 어장 훼손과 수산물 절취를 근거로 스쿠버활동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마찰도 발생하고 있음(홍장원, 2013)
- 또한 일부 어촌계는 다이빙샵에게 지역발전기금 등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킨스쿠버활동을 허락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업권에 따른 어장의 출입문제(다이버 입수권), 다이빙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발전기금 등 비용분담으로 활동주체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홍장원, 2012)
- 특히, 스쿠버활동을 위한 입수권의 문제, 수산물 절취의 문제 등으로 레저인과 어업인간 분쟁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스쿠버 다이버 린치사건이나 수산물 절취에 따른 다이버 입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한편, 제주도 지역은 해중유어장을 도입하여 스쿠버 이용객에게 1인 2마리까지 수산물의 포획을 허가하고 있어 수산자원보호령과는 다른 차원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제주도에서는 4개의 잠수 유어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입어료 3만원~5만원을 지불하면 유어장에서 작살피싱을 통하여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음
- 유어장의 운영은 사업주체인 어촌계가 유어장 허가와 더불어 이동선박(어선)을 관리함. 그리고 지역 다이빙업체가 다이버 모객을 대행하며 운영되고 있음
- 잠수 유어장에서는 고급어종 포획금지 및 포획한 어류의 판매는 금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들어 수산물의 채취나 포획보다는 이를 관찰하는 다이빙이 활성화되면서 잠수유어장을 방문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 보호 및 활동 구역과 관련한 법령들은 다음과 같이 수산자원보호령과 더불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수산자원"이란 수증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
2.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3. "배타적경제수역등"이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의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77조에 따른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 들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개정 2009.9.21> <개정 2009.9.21>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3. 1분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질계·갈구리
7.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제209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어"라 함은 낚시 및 작살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등) ① 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 안에서 어류를 포획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바리(다금바리), 붐바리, 능성어(구문쟁이)는 포획할 수 없다.

1.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2.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하거나 또는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단, 물안경, 물갈퀴 이용은 가능함) 잠수하여 작살을 사용하는 행위

②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으로 하여금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물의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유어행위를 하도록 입어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어객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1일 1인당 어류 2마리까 지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한 어류는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할 수 없다.

④ 유어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이 유어장 이용시에는 "유어장 이용 및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유어객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한편, 어업인과의 마찰이 부족한 것은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해중공간, 연안공간)의 미흡으로 활동에 장애발생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모델 부재한 데 원인이 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어업인)과 다이버(다이빙샵)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하여 해중레저 활동공간 확보 및 어업인의 소득다양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다. 해중레저 활동과 관련된 안전, 교육 기반 미흡

-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한 해중레저활동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지만, 올바른 지식 및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고압의 환경에 노출되어 감압 질환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육 및 이에 대한 인증에 대한 사항은 10여개의 국내의 민간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각각의 단체별로 권장하는 기준과 교육, 그 인증을 위한 난이도가 다르며, 이마저도 외국의 체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므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음.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임
- 국내의 다이빙 환경은 수중시야와 수온의 분포가 외국의 다이빙 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동해, 남해, 서해 역시 각기 다른 다이빙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내 다이빙 환경 및 우리의 체질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시간, 이수과목 등의 교육 이수 인증 기준, 안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다이빙 교육을 위한 강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인증과정의 경우에도 이들의 교육·인증과정과 자격의 취득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²⁾
- 또한, 이와 관련하여 дай버 샵 및 강사의 숫자, 이들의 안전교육 실태, 다이버들의 활동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와 통계의 수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러한 결과물로서의 통계자료의 공유 및 이를 활용한 연구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그 외에도, 스쿠버다이빙을 위시한 해중레저활동, 나아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에 많은 장애물들이 해당 어촌계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주로 다이버들의 해중레저활동이 해당 해역을 오염시키고, 어장을 훼손하며, 이들이 해·수산물의 절취 등을 일삼는 다는 어촌계의 불신에서 시작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이버들의 자체적 정화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다이빙 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 어장훼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작업도 시급함

라. 시사점

- 국내 해양관광활동 여건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제도, 스킨스쿠버활동 참여 의향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관광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해양레저활동이나 스킨스쿠버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잠재 시장의 형성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스킨스쿠버 활동을 중심으로하는 해중공간에서의 관광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중장기 육성 전략 등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정책수립과 연계되는 기초적 통계자료의 구축과 관련해서 스킨스쿠버 활동은 기초적 현황이나 제도적 제약요인 분석 등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이 크게 미흡하며 정책을 담당하기 위한 기관의 부재 등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한 공간의 부족이나 어업인과의 마찰이 매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다이버들의 수산물 절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다이빙 포인트까지의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어선을 이용하는 문제가 현행 법령상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어선을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한 교육, 자격증 발급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전개됨에 따라 이들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나 인증, 안전관리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해중레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나 필수 교육 사항에 대한 공통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스킨스쿠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의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활동자들의 편의제공과 더불어 지역주민인 어업인들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스킨스쿠버와 관련된 제약요인이나 마찰요인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정책대안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채현, 조대환, "해양레저활동으로서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제도적 현황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 p.66

해중레저 국내외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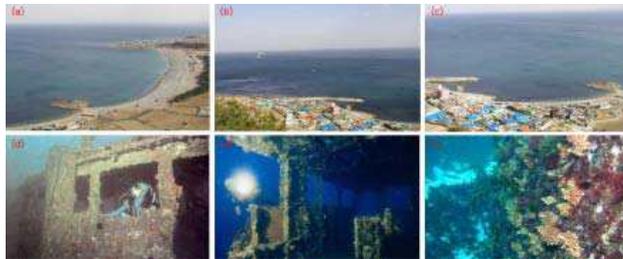
03

1) 국내 해중레저 사례

(1) 포항 월포, 조사리

가. 지역의 현황 및 전경

- 포항의 월포, 조사리 지역은 인위적 해중경관의 조성지로 잘 알려진 곳으로 이곳은 1984년에 침몰한 화물선으로 길이44m, 폭8m의 선체가 3등분 되어서 그대로 수장되어 있으며 최고 수심은 24m로 다이빙하는데 적절한 수심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II-25】 포항 월포, 조사리 해중경관 우수지역 현황

주: (a)~(c) : 포항월포, 조사리해중경관우수지역전경모습
 (d)~(e) : 1984년화물선이침몰되어20여년간수장된후바닷속경관자원으로변화된모습
 (f) : 침몰선선박주변에서식하는해조류도바닷속경관자원임.
 자료: <http://www.aquabel.co.kr>

나. 인위적 해중경관 조성

- 기존의 조사리 난파선은 20여년이 흘러 다양한 정착성 어류와 저서생물들로 바닷속 경관이 매우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수중레저를 즐기는 많은 дай빙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음

- 2002년 5월에는 부처님 오신날 수중불상 참배 다이빙 이벤트를 통해 수중 불상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침몰선 2척을 투여하여 난파선 다이빙 전문 리조트로 조성되고 있음
- 이 지역은 폐선을 투하함으로써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어초의 대체 구조물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최근 주변국가와의 경제수역 조정으로 인한 감척어선과 노후화된 선박의 사후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됨



【그림 II-26】 포항 월포, 조사리 인위적 해중경관 조성

주: (a)~(c) : 100톤급 저인망 투여된 침몰선2척
 (d) : 은밀한 유혹(남근석) - 메밀땅 포인트 중 수심이 가장 깊으며 남근석의 사머니즘적인 의미를 강조한 포인트로 특남의 소원이 이루어진다(2002년6월투여), 수심19m, 앵커라인 설치
 (e) : 십자가- 메밀땅 넓은 암반 최고봉에 위치하며 дай빙의 안전을 기원, 수심10m, 앵커라인 설치
 (f)~(g) : 수중불상(석굴암) - 메밀땅 포인트 중 최고의 포인트 중 하나로 큰 동굴에 부처님을 봉안하여 дай빙의 안전을 기원(2001년10월투여), 수심 12~17m, 앵커라인설치
 자료: <http://www.aquabel.co.kr>

다. 운영 및 관리

- 경북도청 수산과와 조사리 어촌계에서는 침몰선의 사후관리를 위해 월포, 아쿠아벨 리조트에 관리책임을 위탁하고 리조트측에서는 독점가이드를 할 수 있는 계약체계를 구축하였음

(2) 강릉 사근진 스킨스쿠버 체험마을

가. 지역의 현황 및 전경

-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인근에 위치한 사근진어촌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스킨스쿠버 체험마을로 운영되고 있음
- 사근진 마을은 2005년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잠수체험 유어장을 지정받았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잠수연수시설(숙박시설, 연수시설 및 잠수 활동을 위한 콤프레셔 시설)을 지원받았으며 다이빙 포인트까지의 이동을 위하여 전용선박까지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음



【그림 II-27】 강릉시 사근진 어촌계 잠수 시설

나. 인위적 해중경관 조성

- 다이빙활동을 위한 공간이 되는 포인트는 사근진어촌계의 공동어장인 경포 앞바다 십리바위와 오리바위 부근임.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및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바다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근진어촌계를 지정하고 이곳 앞바다에 난파선과 인공어초 투하사업도 함께 진행하여 인공적인 다이빙포인트를 조성하였음

【표 II-21】 사근진 어촌계 잠수체험시설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사근진 집안시설보강	물양장15m 돌계보강50m	124,000	99,200	9,300	9,300	6,200
사근진 체험어장조성	인공 구조물2개	376,000	301,000	28,000	28,000	19,000
사근진 잠수연수시설	1동/3층 (296㎡)	400,000	320,000	30,000	30,000	20,000
사근진 어촌계사무실	1동/2층 (257㎡)	262,000	209,600	19,650	19,650	13,100

자료: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내부자료.
홍장원(2013).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재인용)



【그림 II-28】 강릉시 사근진 난파선 및 인공어초 투하

자료 :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경포다이브리조트 홈페이지

다. 운영 및 관리

- 사근진어촌계에서는 잠수연수시설의 관리 및 스쿠버다이버의 모객을 위하여 경포다이브리조트가 협약을 맺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및 강원도, 지자체인 강릉시의 지원으로 사근진 어촌계의 잠수 유어장은 비치다이빙과 더불어 보트다이빙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C-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오픈워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사근진어촌계는 '가고 싶은 어촌체험마을' 로 지정되어 스킨스쿠버 마을로 운영되고 있음
- 한편, 강릉시에서는 2007년부터 사근진 지역을 '해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했으나, 2009년 해당사업을 잠정보류하면서 현재는 스킨스쿠버 활동공간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3)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

가. 지역의 현황 및 전경

- 문섬은 서귀포시 해안에서 남쪽으로 1.3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해발 85m의 본섬과 32m의 바위섬(새끼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0.094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문섬의 남동쪽은 공작새가 꼬리를 펼쳐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주상절리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중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바닥은 수심 약 55m의 깊은 곳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는 지역임
- 또한 이곳은 시립해양공원지구로도 지정되어있으며, 1994년에는 세계수중사 진촬영대회가 개최되었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해중경관으로 알려져 있음
- 제주도 연안에서 손꼽히는 해안경관과 해중경관을 나타내며 세계 유일의 맨드라미 산호군락이 서식하는 지역임



【그림 II-29】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 위치도

나. 인위적 해중경관 조성

- 해안가는 주로 바위로 되어있고, 문섬의 수중암벽 조하대는 수심 15~35m까지 직벽으로 형성되어 있음. 수중 36~45m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나타내며, 해저면에는 큰 바위들이 있음
- 문섬의 수심15m 지점에는 연산호류 4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미역, 감태 등 해조류가 많이 있음
- 수심20m 지점에는 갯돔, 자리돔, 쥐치, 범돔, 줄도화돔, 문어, 해삼 등 다양한 어류와 해양동물을 관찰할 수 있음
- 수심 30m 지점에는 맨드라미산호, 부채산호, 가시산호, 해송, 해면 등이 고밀도로 서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가 아름다운 해중경관을 연출하고 있음



【그림 II-30】 문섬 일대의 해중경관

다. 운영 및 관리

-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잠수함을 통해 많은 일반인이 해중경관을 감상하고 있으며, 수중레저 дай버들이 가장 많이 즐겨찾는 곳임. 자체적으로 정화활동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구체적인 관리·이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됨

2) 일본 : 이토우(伊東)지역의 어협 직영 다이빙센터 등

(1) 이토우 어협 일반현황

- 이토우(이토우)시는 후지하코네이즈국립공원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40km의 해안선을 가지는데 약 75,000명의 인구에 약 31,500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 아름다운 산과 청정한 바다 그리고 고품질의 온천이 자리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관광은천문화도시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이토우 어협은 정조합 571인, 준조합원 1,35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현망, 정치망, 봉수망 등 다양한 어법을 사용하여 소라, 전복, 큰새우, 고등어, 콩치, 돔 등 갖가지 어패류를 생산하고 있음
- 매년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약 11,000톤의 어획량과 약 25억 엔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음



【그림 II-31】 이토우(伊東)시가 있는 이즈반도의 위치

- 이토우 어협은 주요 사업으로 공제사업, 구매사업(유류, 어구, 어망, 생활물자), 판매사업(생선류, 패조류, 수산가공품 등), 제빙냉동사업, 시설이용사업(상하가시설 및 어구창고), 어업자영사업(대형 및 중소형 정치망, 축양식, 잠

수어업 등), 무선사업, 지도사업(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지도) 그리고 3개소의 어협 직영 다이빙서비스센터(카와나, 후토, 야와타노)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신용사업은 시즈오카현 신용어업협동조합연합회(일반적으로 어련(漁聯)이라고 함) 이즈 이토우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이토우 어협 직영 다이빙서비스센터의 최근 3개 년 간 평균 매출은 약 2억 엔 이상으로 순수 어업활동에 따른 어획고의 약 8~9%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어업 외 소득을 올리고 있음
- 그 밖에 이토우 어협 관할 하에 있는 7개 어항에서는 1척의 유람선과 약 20척 전후의 낚시어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어협과 제휴하여 민박(저녁과 아침식사를 포함)을 운영하고 있음

(2) 이토우 어협 직영 다이빙서비스센터 (3개소)

- 이즈반도는 전체가 다이빙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이빙 활동이 성행하고 있는데 東이즈에 10개소, 南이즈에 4개소 그리고 西이즈에 8개소가 대표적인 포인트로 꼽히고 있음



【그림 II-32】 이즈반도 내 주요 다이빙포인트와 다이빙센터

- 이 가운데 이즈반도의 동쪽 이토우(伊東)市 내에 위치한 이토우 어협에는 3개의 직영 다이빙서비스센터 이외에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긴 3개 센터(이토우, 우사미, 아카자와)가 더 있으며, 기타 개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사설 다이빙센터가 있음
- 3개 직영센터도 약 10년 전까지는 민간에 위탁 처리해 왔으나, 이용자가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어협에서 직영체제로 바꾸었음. 물론 기존 업자의 반발은 있었으나 직영센터에 취업을 보장하는 등 대안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였음
- 이토우 어협 관할 6개 다이빙서비스센터의 최근 3년 간 이용자 수와 총 매출은 다음과 같음

【표 II-22】 우리나라 해중경관 우수지역의 개요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합계		
	이용자	총매출	이용자	총매출	이용자	총매출	이용자	총매출	
직영	카와나	10,229	51,100	9,083	44,500	9,364	53,500	28,676	149,100
	후 토	27,988	123,100	27,398	116,000	26,515	112,300	81,901	351,400
	야와타노	9,465	36,600	8,344	31,200	7,038	27,200	24,847	95,000
	소 계	47,682	210,800	44,825	191,700	42,917	193,000	135,424	595,500
민간 위탁	이토우	4,979	2,900	1,995	2,900	4,545	2,600	11,519	8,400
	우사미	3,353	1,700	3,489	1,800	3,514	1,800	10,356	5,300
	아카자와	7,741	4,040	5,515	2,800	2,961	1,500	16,217	8,340
	아지로			321	190	360	200	681	390
	소 계	16,073	8,640	11,320	7,690	11,380	6,100	38,773	22,430
합 계	63,755	219,440	56,145	199,390	54,297	199,100	174,197	617,930	

자료: 홍장원(2013). 해중경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최근 3년 간 174,197명의 방문객이 617,930천 엔을 지출하여 전체적으로는 1인당 평균 약 3,550엔을 지출하였음
- 3개 직영센터는 비치다이빙 또는 보트다이빙 관련 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산소탱크 임대비, 보트 승선료 등을 받기 때문에 1인당 지출액이 다소 높음
- 반면에 민간 위탁 다이빙센터는 평균 매출이 약 600엔/인 정도로 낮는데 이는 어협에 어장관리비(또는 연안시설 정비 및 청소비) 정도인 입어료(入漁料) 정도만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임

- 이토우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스쿠버활동은 다소 침체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2011년의 동북 대지진의 여파로 여겨짐
- 직영 다이빙서비스센터에서는 다이빙 교육과 수중가이드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지 지 않으며, C카드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선박 사용료와 산소탱크 렌탈비 그리고 시설이용료/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
- 직영하는 각 다이빙센터에는 2명의 직원이 접수 및 등록, 보트 다이빙 알선, 산소탱크 대여, 인터넷에 바다정보 제공, 샤워 및 화장실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각 센터 내에는 콤프레셔가 없으며 산소 충전은 인근 업체인 “이즈해양공원 내 다이빙센터” 등으로 재위탁 처리하고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오키나와의 일부 다이빙샵에서는 전용 선박을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이토우 지역에서는 보트다이빙시 유어선과 어선을 활용한다고 함
- 한편 어선을 다이빙활동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규정이나 제한은 없으며 관행적으로 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 다른 마찰은 없음
- 다이빙 활동을 위한 어선사용은 어업인들이 보트이용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순번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스쿠버로부터 받는 금액의 약 80~90% 정도는 선박 소유자인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어업 외 소득이 되고 있음
- 이토우 어협 관할 해역에서는 스쿠버와 어업인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거의 없는데, 몇 년 전까지는 극소수 수산물 절취자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홍보를 통하여 근절되었음
- 스쿠버들은 수산물을 절취하지 않고 경관감상과 사진촬영 등의 관람형 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음
- 또한 해저 내 그물과 폐비닐 등 청소 등의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협은 이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등 다이빙센터에서 2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어업인들을 설득하였음
- 이토 어협 다이빙센터의 이용요금은 시설 수준과 접근성, 부대시설의 편리성 등에 따라서 이용료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다이빙샵을 통해서 오는 이용객 요금이 일반요금 보다 약 30~40% 저렴한데, 시설사용료는 다이빙샵 요금과 일반요금이 동일함

【표 II-23】스킨스쿠버 자격증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구분 / 센터	카와나	후토	야와타노
시설이용료 및 관리비 (방문객 1인당)	1,500	1,500	1,050
산소탱크 (10리터/개 기준)	1,250	1,050	2,100
보트이용료 (1명/1다이브)	2,500	3,150	2,625
주차료	무료	525~1,050	525

주) 1. 시설이용료 및 관리비 : 다이빙샵의 스태프 1인은 무료, 보트이용료 : 이용객 4명일 경우 다이빙샵 스태프 1인 무료
 2. 최종 entry 15:30 (5월 15일~9월 14일) - 그 외에는 14:00, 최종 exit 16:30 (5월 15일~9월 14일) - 그 외에는 15:00
 3. 다이빙센터 영업시간 : 0800~17:00
 자료: 홍장원(2013).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해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는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다이빙센터와 이토우소방서본부(또는 타이시마지소)를 통하여 응급차로 시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음
- 이후의 조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중증인 경우 동해대학 의학부속병원으로 이송시켜 치료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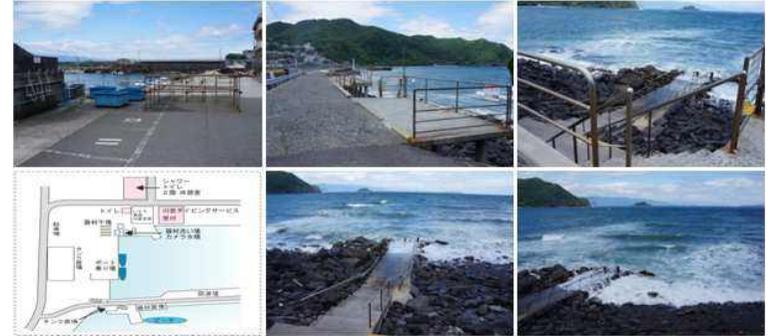
가. 카와나 다이빙서비스센터

- 카와나는 3개 직영 다이빙서비스센터 중 두 번째로 이용객 수와 매출이 많음. 매년 1월에 한 해 동안의 이벤트계획을 수립하는데 발렌타인 기념시설물(2월), 칠월칠석 기념물(6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11월) 등을 바닷속에 설치하여 수중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카와나 지역에는 어협 직영 다이빙서비스센터를 포함하여 지역 내 민간 운영 다이빙센터들이 “카와나다이빙협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어선과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들은 카와나다이빙조합을 조직,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직영 센터는 받은 보트이용료 가운데 80~90%를 해당 어선 소유 어업인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음(500~700엔/인)



【그림 II-33】카와나 다이빙센터의 외/내부 모습

- 이토 어협 다이빙센터에서는 기상 및 海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이빙포인트와 수중경관 감상이 가능한 어페류를 소개하고 있음
- 주요시설로는 운영건물과 진출입이 분리되어 있는 비치다이빙 진출입로와 가이딩 로프, 보트승선장, 스쿠버장비 세척시설과 수중카메라 수조, 샤워실 및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있음



【그림 II-34】카와나 다이빙서비스센터의 다이빙 진출입시설

나. 야와타노 다이빙서비스센터

- 야와타노 센터의 특이한 점은 어항 바로 바깥쪽 어선의 통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에 인공적으로 암반을 투하하여 해초 서식지를 형성함으로써 물고기가 많이 몰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임



【그림 II-35】야와타노 다이빙서비스센터 전경 및 내부 모습

- 주요시설로는 운영건물과 진출입이 분리되어 있는 2개소의 비치다이빙 진출입로와 가이딩 로프, 옥내와 샤워시설, 휴게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트 선착장, 장비세척장, 카메라 전용수조 등이 있음



【그림 II-36】 아와타노 다이빙서비스센터 인근의 공간활용

다. 후토 다이빙서비스센터

- 후토 센터의 특징은 온천지역이라는 장점을 살려 야외에 선박모양을 새워 및 목욕탕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40도에 가까운 온천수가 흘러 나와 찬 물을 섞어서 사용할 정도임
- 다음과 같이 다이빙포인트와 인근 수심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제공되고 있음
- 어항 내측으로는 통항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어선 항로를 가로질러서 넘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림 II-37】 후토다이빙서비스센터 전경 및 내부 모습



【그림 II-38】 후토 다이빙서비스센터 활동공간

(3) 이즈해양공원 다이빙센터

가. 개요

- 이즈해양공원 다이빙센터는 일본 최초의 다이빙 전용 교육시설로서 1964년 마사다(益田) 해양프로덕션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는데, 1966년 동해대학 해양학부의 잠수훈련센터를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다이빙 전용교육/체험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 약 15년 전까지 C-card 발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최근에는 교육/체험공간 대여 사업만을 하고 있음
- 다이빙센터의 운영은 Fan Diving을 위주로 하며, 2개의 pool장 (50×20×(1.1~1.7)m와 4×4×4m) 이용료와 탱크 대여료가 부수입원이라 할 수 있음
- 다이빙센터의 운영인력은 총 10명이 근무하며 매일 기상상황과 해상여건(조업여건, 해중시설여건) 등에 대해서 스태프회의를 거쳐 체험 다이빙 입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아울러 사고 등에 대한 긴급대응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사고에 따른 응급처치요원, 구조원, 감시원, 기록원, 통보원 등으로 역할 분담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훈련센터에서 배출한 전문 다이버는 6,000여 명을 넘는데 수산시험장과 수족관, 해양조사회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해양레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음



【그림 II-39】이즈해양공원 다이빙센터 전경

- 다이빙센터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C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다이빙샵을 통한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이빙샵의 인스트럭터를 제외한 연간 방문객 규모는 약 24,000~28,000명인데, 과거 스쿠버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았을 때는 약 40,000명까지 이용한 적도 있음
- 한편 이즈해양공원 다이빙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내 다이빙샵은 약 300개 정도임
- 센터는 일본내 최대 규모의 컴프레셔와 함께 약 2,000개의 산소탱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약 1,200개가 회전시키고 있음. 한 번 산소 주입으로 34개의 탱크를 채울 수 있으며 이 때 소요시간은 약 5분 내외로 꽤속 충전이 이루어짐
- 바다쪽으로는 입구와 출구가 분리된 다이빙 전용 slop가 있으며(슬로프 길이는 약20m),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보트 다이빙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림 II-40】이즈해양공원 다이빙센터 내 세부시설

- 다이빙센터는 이즈어협과 어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밀접하게 교환하고 있는데, 특정 어종의 산란시기에는 어장 진입 금지, 조업시기에 따른 스쿠버 활동제한(바다 진출입 시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고 있음
- 한편 국립공원에 위치하지만 작살피싱과 일반 낚시행위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음
- 이즈해양공원 다이빙센터의 시설요금표는 이즈어협 직영 다이빙서비스센터와 유사하게 다이빙샵을 통해서 오는 이용객 요금이 일반요금 보다 약 30~40% 저렴함. 다양한 장비 가운데 주요 장비에 대한 조건표는 다음과 같음

【표 II-24】다이빙센터 운영 요금현황

구분\센터	SHOP 요금	일반 요금	비고
시설이용료 (방문객 1인당)	1,365	2,415	다이빙샵의 스텝의 시설이용료는 무료
산소탱크 (10리터/개 기준)	1,312	2,100	탱크 등의 렌탈은 예약제로 실시
잠수복 (Wet Suit, 上下)	1,470	2,100	다이빙센터 영업시간 : 0830~17:80
마스크와 스노클 Fin과 부츠(세트)	각 735	각 1,050	이 외에 다양한 렌탈 장비가 있음

자료: 홍장원(2013).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나. 다이빙센터 내 주요 시설

- 이즈해양공원 다이빙센터 내 세부시설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운영건물(프런트, Information center, Divers lounge), 야외샤워시설 및 탈의실, 2,000개에 이르는 산소탱크, 한 번에 34개를 충전할 수 있는 3기의 컴프레셔, 다이빙풀과 50m풀, 어린이용 노천풀 등이 있음



【그림 II-41】이즈해양공원 다이빙센터 다이빙교육 체험사진

3) 시사점

(1) 특색있는 해중레저 경관지구 조성

- 지역의 우수한 해중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중레저지구를 조성하거나 특색있는 해중경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공해중경관 조성을 통한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노력
- 해중레저 경관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 등의 민간 차원에서보다는 공공 차원에서의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2) 해중레저 거점 시설 조성

-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거점 시설 조성으로 특히 해중레저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한 해중레저 교육시설 조성
- 또한 해중레저 관광객의 교육과 안전 등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거점 시설 조성을 통해 해중레저 관광객의 지속적인 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시설 마련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

(3)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방안 마련

- 해중레저 관광객과 지역 어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나아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민들이 직접 해중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한 해중레저 활동에 적용하는 방안 도입과 지역주민 교육을 통한 해중레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1)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 해중레저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해중레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현행법상 방법은 해중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함.
- 해중경관지구의 지정기준은 생물지리적 기준, 해상해중환경, 기준, 사회적 측면, 생태적 기준, 지역적 기준, 실용적인 기준, 인위적 조성 기준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정기준을 보다 현실적·과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육상-해상-해중지역의 자연환경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지역이 해중경관지구로서 갖고 있는 특성과 잠재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1) 생물지리적 기준(Biogeographic Criteria)

- 해중경관지구의 지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환경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육지의 경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형의 변화가 다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희귀한 생물지리적 특성이 존재하거나 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전시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함.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해안 지형이 성상(性狀)이나 형태의 다양성이 풍부한 곳
 - 침강 또는 융기해안으로 모래나 바위가 많고 지형에 변화가 있는 곳
 - 바다 속 지형의 변화나 저지(低地) 조건이 바뀌나 모래땅 등 변화가 풍부한 곳
 - 정착성의 생물, 계절에 따라 이동하거나 또는 회유하는 어류, 생물적 가치나 희소성이 있는 생물 등 관상효과를 높이는 생물의 연중 존재가 기대되는 곳

- 수심에 따라 생물상이 다르거나 저지(低地)의 조건 변화에 따라 서식생물이 차이가 있는 등 풍부한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
- 수산자원적인 어종 외에 생태적으로 관상효과를 높이는 어종이 다수 존재하는 곳
- 상어, 해파리 등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생물의 존재 여부가 확인된 안전한 곳

(2) 해상·해중환경 기준(Sea & Undersea Environmental Criteria)

- 해중경관지구의 해상기준은 바다의 특성상 이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기후나 지역에 따른 해상해중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중시계, 정온도, 수온, 수심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 절대적 기준보다는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수심이 깊지 않고 원만하게 변화하는 곳으로 수심이 10~30m 확보될 수 있는 곳
 - 조류나 파도가 강하지 않아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등 수중체험 활동이 가능한 곳
 - 연중(年中) 이용할 수 있도록 정온도가 높은 지역
 - 해중시계(海中視界)가 연평균 10~20m 이상이 확보되는 곳
 - 배후지로부터 해수의 오염원이 없어 수질이 1등급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곳
 - 수중 물질, 수중 구조물 등 다른 외부 위험요인이 없어 수중활동에 안전성이 확보된 곳

(3) 사회적 수용 기준(Social Acceptance Criteria)

- 해중경관지구의 지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지지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사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지역은 행정민원과 갈등이 예상됨
- 지역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거나 여가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어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해가 상충될 수 있음. 따라서 지구를 구획할 때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정함
-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어장보호구역등해역의 이용과 관리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해중경관지구의 기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세부적인 지정 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민거나 어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아 분쟁과 갈등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

- 역사적 유물(Seascape Heritage), 역사, 문화, 전통, 교육, 여가 특성 때문에 지역, 국가, 국제사회에 가치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

(4) 여가선용 기회(Recreational Opportunity)

-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여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의 해중환경에 대해 배우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어 보호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 따라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에 한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관광지 개발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
 - 해중경관자원 보전의 목적과 개발의 목적이 양립할 수 있는 지역

(5) 생태적 기준(Ecological Criteria)

- 다양성 기준은 바다 속의 동식물 서식지, 군집, 종의 다양성 또는 풍부도를 의미함. 높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하지만 이 기준은 몇몇의 개척지 또는 극상 군집 또는 높은 파도에너지에 노출되기 쉬운 해중의 환경에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가능한 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훼손된 해중지역의 생태계는 어업, 관광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중경관지구는 훼손이 덜된 자연성이 높은 지역에 지정되어야 함. 반면 가치가 높은 지역중에서도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해중경관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함
-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하고 풍부한 종이 분포하는 지역(서식지의다양성)
 - 바다속 해중생태계의 인위적 교란이나 훼손정도가 적은 지역
 - 해양 동식물이 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높은 지역 또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태적 과정에 생태계가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지역
 - 해양 동식물의 서식지 형태, 생태적 과정, 생물 군집 등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
 - 멸종 위기종, 보호종 등 단지 한 지역에만 있어 특이성을 나타내는 지역

(6) 과학적 중요성(Scientific Importance)

- 해중의 경관자원이 학술적·교육적으로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학술적 연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과학적인 사실의 규명이나 교육적 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

(7) 실용적인 기준(Practical Criteria)

- 많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관리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야 함
- 해중경관지구의 규모는 타 법률에서 지정하는 지구와 중첩 또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는 최소화하여 설정함
-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법·제도적으로 해역의 관리가 가능한 지역
 - 생태적 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범위를 설정
 - 교육, 관광, 여가를 위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 관리가 용이하거나 현존하는 관리체계와 양립이 가능한 지역

(8) 인위적 조성 기준(Artificial Construction Criteria)

- 해중의 경관은 지역에 따라 거의 유사한 환경을 나타내거나 바다속 환경이 황폐화되어 경관자원을 차별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해중경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인위적인 조성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해저보물, 침선(Shipwreck), 전쟁유물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자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해 볼 수 있음
-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바다 속에 경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경관자원 조성을 위해 침선(沈船), 폐선(廢船), 인공어초 등의 활용이 가능한 곳
 - 해저유물 또는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발견된 곳

2) 해중레저 기초환경의 개선

(1) 다이빙문화의 보급과 확산

가. 적극적인 홍보 활동

- 다이빙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는 다이빙활동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대중적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국내 스킨스쿠버 활동은 기초 환경의 개선에 앞서 국내 다이빙문화의 홍보를 통하여 대중적 관심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함. 이에 따라 한국잠수단체 대표자모임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나. 기초 현황 자료 확보

- 정책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이빙활동과 관련된 기초적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앞서 제약요인에서 제시한 것처럼 스킨스쿠버를 포함한 해중공간에서의 관광활동이 제도권 하에서 활성화되고 정책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현황분석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단체 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는 업체의 기초적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정책부서에 제도적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영세 다이빙업체의 지원·육성, 기반시설의 구축, 활동공간의 조성과 관련된 정책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

- 이와 더불어 국내 다이빙문화가 채집이나 먹거리 다이빙에서 벗어나 해중환경감상이나 자연환경보전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현황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다른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다이빙활동객이나 지역업체에서는 수산물채집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단체나 지역 다이빙샵에서 Eco-diving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식되고 있지 못함

-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 봉사 및 유대관계 마련을 위하여 지역협회, 동호회 등에서는 마을어장 정화사업이나 수중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다이빙활동에 대한 소개나 Eco-diving 등 다이빙활동에 대한 캠페인을 순수 민간단체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라. 중앙 부처 및 관련 단체와 협력 관계

- 한편, 국내에는 스킨스쿠버 관련 지원정책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담당하기 위한 정책업무는 부처 간 역할에 따라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음
- 스킨스쿠버 활동공간과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물부가 연계되어 있으며 해양관광 기반시설의 조성이나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전한 다이빙문화의 확산은 지역 어업인과의 갈등해소 및 어촌 지역 소득다양화 측면에서 농림수산물부와 협력하여 초기 홍보사업을 전개 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 농림수산물부는 스킨스쿠버 교육단체와 스킨스쿠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스킨스쿠버 체험이벤트를 개최하고 지역 수산업 협동조합간 MOU체결을 통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이밖에 어촌어항협회의 어촌마을 찾아가기 행사나 어장정화 캠페인 등을 스킨스쿠버 관련 단체와 연계되도록 지원함
- 이와 더불어 스킨스쿠버교육단체와 지역 다이빙샵, 일부 다이빙리조트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에코 다이빙(Eco-diving)6 프로그램을 관광활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산물채집중심의 다이빙활동에서 벗어나 해중경관 감상 중심의 다이빙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일반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함

(2) 스킨스쿠버 활동 공간의 조성

- 스킨스쿠버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은 앞선 건전한 다이빙문화의 확산과 연계하여 스킨스쿠버 활동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협력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서 시작해야 함
-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다이빙 활동자들의 만족도제고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사항임. 한편, 다이빙 활동공간의 지정 혹은 조성은 다이빙 포인트를 포함한 관광자원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가능함
- 따라서 국내 스킨스쿠버 시장의 활성화는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지정하는 데서 벗어나 국내 연안지역의 다이빙샵을 중심으로 이들이 스킨스쿠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서 시작하도록 함
- 다이빙활동공간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체험 다이빙객의 육성 및 초보 다이버 교육공간의 조성차원에서 다이빙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비치 다이빙공간을 유어장으로 지정하고 어업인들을 대신하여 지역 내 다이빙샵에서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비치다이빙공간에는 다이빙진출입 안내판,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체계 안내 시설과 더불어 안전난간, 로프를 설치하여 초보자들도 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제주도 지역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시즌을 중심으로 비치다이빙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례로 활용하여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해중공간에서의 스킨스쿠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관 포인트를 조성하도록 함
 - 현재 국내에는 농림수산물부의 바다목장화사업이나 바다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거나 폐선 등을 활용하여 다이빙포인트를 조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여 해중시계가 우수한 국내 다이빙 포인트 지역을 선별하고 인공어초나 조각상 등을 투하하여 수산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함께 인공적 해중경관이 조성되도록 함
 - 해중경관 포인트의 조성은 일부 수산물 먹거리 다이버들에게도 경관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활동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다이빙활동 안전성 제고

- 다이빙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호주 등 다이빙 선진국에서는 다이빙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매뉴얼을 개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즉 다이빙 활동을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Recreational diving), 상업적 다이빙(Commercial/occupational diving), 과학적 다이빙(scientific diving)으로 분리하고 다이빙활동에 따른 안전수칙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관광활동 목적의 다이빙에 대해서는 상업적이나 과학적 다이빙과는 다르게 이용자나 다이빙업체의 운영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국내에는 각 교육단체별로 교육매뉴얼은 구축되어 있으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부나 다이빙관련 협회차원에서 최소한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역 다이빙 샵이나 다이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안전 가이드라인은 다이빙 활동을 규제하는데서 벗어나 다이빙활동의 안전성 홍보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기초적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안전매뉴얼의 구축과 더불어 해상공간에서의 다이빙활동을 위한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다이빙활동 깃발과 부표를 스쿠버다이빙 활동시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함
-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다이빙 활동자들은 스쿠버활동을 표시하는 안내 깃발과 부표를 설치한 후 다이빙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이와 더불어 이러한 안내 깃발을 해상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어업인이나 레저보트를 운항자들이 이러한 깃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서귀포지역에서는 다이버의 출수과정에서 선박과 충돌하면서 다이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 다이빙활동 깃발이나 부표의 표시는 다이버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레저보트 운항자들에게 안내경고의 표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다이빙깃발과 부표의 의미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다이빙샵이나 다이빙관련 협회에서는 이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함

- 이와 더불어 다이빙 활동시 선박과의 충돌이나 선박의 스크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이빙선박에는 스크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다이빙부표가 설치된 구역을 항행할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두는 방안 또한 다이빙 안전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도록 함³⁾. 그리고 스킨스쿠버 활동에 활용되는 산소통의 관리규정도 함께 제정하여 안전한 다이빙문화를 육성하도록 함

3) 해중레저를 통한 지역 수익모델의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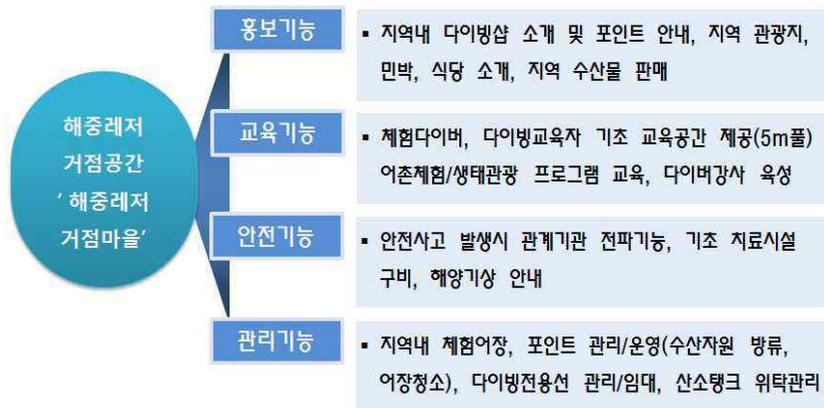
(1) 해중레저 거점공간 선정·육성

- 국내에는 스킨스쿠버를 테마로 어촌체험마을이나 해양관광시설 등이 지역에 따라 일부 조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음
- 그리고 앞선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협 등 지역의 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스킨스쿠버 사업이 어업활동을 통한 소득을 대체하는 모델로 발전이 가능함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일부 지자체단체는 인공어초나 폐선, 조각품 등을 투하시키는 다이빙포인트 조성사업이나 관광형 바다목장사업을 진행을 통하여 어촌지역의 소득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다이빙샵이나 다이빙관련 교육단체, 지역 어업인들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강한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해양관광의 특성상 어업인이 스쿠버 관련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기 어려우며 일선 다이빙샵의 경우에도 접안시설 마련, 다이빙포인트 조성 등 다양한 시설투자에 참여하기 어려움
- 한편, 어업인들은 지역내 스킨스쿠버 활동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작용하거나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면 스킨스쿠버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유여장의 지정 및 운영에 참여가 가능함
- 또한 지역 스쿠버샵은 지역내 어장공간을 활용한 체험다이빙 사업이나 유어

3) 서귀포 스킨스쿠버 협회는 서귀포지역 유어선 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다이버 이동선박에 대해서는 스크류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장을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음

-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스킨스쿠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도출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킬수 있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게 됨
- 이러한 순환구조 및 협력구조를 얻기 위해서는 해중레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공간의 조성이 필요함
- 즉, 국내 스킨스쿠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관광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물부의 바다목장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국토해양부의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다이빙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이곳에 기반시설을 투자하여 스킨스쿠버 활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함
- 거점공간의 역할을 하게 ‘해중레저 거점마을(가칭)’은 지역 스킨스쿠버활동의 거점공간으로 해당 지역의 해양관광과 관련된 종합 안내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그림 II-43】 해중레저 거점마을의 기능

- 해중레저 거점마을은 크게 홍보기능, 교육기능, 안전기능 관리기능을 갖추도록 함. 이를 통하여 지역내 다이빙샵을 소개하고 포인트를 안내하며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민박집이나 식당, 수산물 판매를 하도록 함
- 그리고 거점공간의 주요 기능인 교육기능 통하여 체험다이버의 안전교육이

나 다이빙강사 교육공간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발생시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일차적인 치료 시설을 통하여 다이빙활동 사망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 또한 지역내 다이빙포인트와 체험어장을 관리하고 다이빙 전용선을 구비하여 이를 다이빙샵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중레저 거점마을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의 유치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림수산물부의 바다목장화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도입 여건을 검토하여 선정하거나 국토해양부의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대상사업 지역의 선정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스킨스쿠버활동객의 방문비중이 높고 내륙의 연계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함
- 또한 연안지역의 관광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해중레저활동 이외에 도시와 어촌의 교류공간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체험활동 및 체험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함

(2) 스킨스쿠버관련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

- 해중레저 거점공간의 선정-육성은 스킨스쿠버 관련 인프라의 개선을 목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사업 등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한편, 국내 스킨스쿠버 활동의 현안은 어업인과 스킨스쿠버 활동자 간의 갈등임. 지역에 따라서는 직/간접적인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이나 어촌계와 협력하고 있지만 활동공간의 제약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공동의 이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의 접근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각 교육단체별로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이나 마을과 상호 협약을 맺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 즉 스킨스쿠버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국내의 교육단체가 지역과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다이빙 상품도 판매하도록 함. 이를 통해서 PADI, SSI, KUDA 등이 어촌마을과 협약을 맺고 이들 마을의 유어장이나 해변공간을 활용하여 스킨스쿠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주민을 교육

시커 스킨스쿠버 강사로 육성시켜 유어장의 관리나 다이빙샵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협력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중경관 조성사업이나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어촌지역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안내교육센터, 다이빙전용선, 체험어장 진입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함. 그리고 공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은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사업이나 해양레포츠 관련 이벤트를 유치시켜 사업이 도시와 어촌의 교류 및 관광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스킨스쿠버 관련 교육단체나 협회와 지역간의 교류는 해중레저활동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소와 더불어 인식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밖에 지역 수익모텔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지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유어장들을 다이빙샵이나 스쿠버 관련 단체가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있음. 즉 어촌계가 운영하고 있는 유어장의 방문객 모집이나 안전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유어장의 안정적 운영을 유도하도록 함
- 또한 이들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홍보사업을 대항하게 하여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함

충남 해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05

- 충남 서해안의 해중레저 관광 여건의 경우 지자체별 민간 차원에서 일부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건 조성파의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충남 해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과제로는 첫째, 해중레저 경관조성, 둘째, 해중레저 배우 여건 마련, 셋째, 지역주민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해중 레저 경관 조성

(1) 해중레저 경관지구의 지정

- 충남의 해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중레저 활동이 발생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충남도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8조에 제시하고 있는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해 해중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중레저 활동 공간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사업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함
- 대상지 선정을 위해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중레저 경관지구 조성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한 사전 발굴 및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 형태의 사업 추진 필요
- 또한 대표 충남 해중레저 대표 경관지구의 선정을 통한 집중적인 육성을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특색있는 인공 해중경관 조성

- 충남 서해안 해중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도서 지역이나 육지 부분과 이격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특화된 자연적 해중경관 지구 개발은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특화된 해중경관을 위해 인공 해중경관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충남 서해안 지자체별 인공어초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중심으로 특화된 해중경관 조성을 통해 해중레저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또한 차별화된 해중경관 조성을 위해 지역의 역사적 사건 등을 주제로 한 해중경관 조성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양 유물 지역의 해중 박물관 조성, 해양 특화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해양공원 등의 조성을 제안할 수 있음
- 국내 스킨스쿠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관광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바다모장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국토해양부의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다이빙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이곳에 기반시설을 투자하여 스킨스쿠버 활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함

2) 해중 레저 배후 여건 조성

(1) 해중 레저 체험/교육 시설 조성

- 충남 해중레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가되는 초보 해중레저 관광객을 위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해중 레저 관련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통해 충남 서해안 해중 레저에 친숙한 잠재방문객의 확보와 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통해 스킨스쿠버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도 교육시설 조성이 마련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스킨스쿠버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국내외 교육단체(PADI, SSI, KUDA)가 지역과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다이빙 상품도 판매하도록 함

- 주요 시설은 운영건물(프런트, Information center, Divers lounge), 야외 샤워시설 및 탈의실, 산소탱크,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콤프레셔, 다이빙 풀과 50m풀, 어린이용 노천풀 등이 있음

(2) 해중레저 편의시설 지구 육성

- 현재 충남 해안 지역의 해중레저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해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요구됨
- 그러나 충남 어촌 지역의 여건 상 해중레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지구 지정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충남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집중 편의시설 조성 지구 지정 등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진행 방식은 지자체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통해 지속적인 편의시설 유치가 가능하도록 진행

3) 지역주민 연계 방안 마련

(1) 충남 해중레저 거점마을 지정

- 어업인들은 지역내 스킨스쿠버 활동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작용하거나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면 스킨스쿠버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유어장의 지정 및 운영에 참여가 가능함
- 해중레저 거점마을은 크게 홍보기능, 교육기능, 안전기능 관리기능을 갖추도록 함. 이를 통하여 지역내 다이빙샵을 소개하고 포인트를 안내하며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민박집이나 식당, 수산물 판매를 하도록 함
- 그리고 거점공간의 주요 기능인 교육기능 통하여 체험다이빙의 안전교육이나 다이빙강사 교육공간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발생시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일차적인 치료 시설을 통하여 다이빙활동 사망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 또한 지역내 다이빙포인트와 체험어장을 관리하고 다이빙 전용선을 구비하

여 이를 다이버샵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중레저 거점마을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의 유치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바다목장화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도입 여건을 검토하여 선정하거나 국토해양부의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함

(2) 지역 시설 활용 수익사업 진행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해중레저 이용객과 연계한 수익사업으로 지역의 어유장을 활용한 해중레저 공간으로 제공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안과 지역의 어선을 통해 다이빙 전용선 활용 등을 통해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밖에 지역 수익모델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지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유어장들을 다이빙샵이나 스쿠버 관련 단체가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있음. 즉 어촌계가 운영하고 있는 유어장의 방문객 모집이나 안전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유어장의 안정적 운영을 유도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어촌지역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안내교육센터, 다이빙전용선, 체험어장 진입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함. 그리고 공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은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사업이나 해양레포츠 관련 이벤트를 유치시켜 사업이 도시와 어촌의 교류 및 관광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참고 자료 ◆

국민안전처, 수중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2015.

경기개발연구원, 신레저시대의 도래와 정책대응, 2011.

김성귀, 해양관광론, 현학사, 2013.

조우정·장보영,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도 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7(4), 2013.

홍장원 외,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 2012.

홍장원 외,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시연구, 2013.

조선대학교,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6.

한국마리나산업협회, 국내마리나 및 요트산업 통계지표 개발, 2013.

해양수산부, 해중경관지구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 2003.